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69
----------	-------

발의연월일 : 2026. 8. 25.

발 의 자 : 이상희 · 배준영 · 엄태영
박충권 · 한지아 · 최수진
고동진 · 김태규 · 김종양
김승수 · 김성원 · 신성범
서천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및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내항화물운송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도서지역의 생활여건 변화와 도서민의 물품 수요 다양화에 따라 현행법에 열거된 품목 외에도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해상운송비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고, 해상운송비 지원과 관련하여 도서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상운송비 지원대상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지역의 물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해상운송비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등).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목재펠릿”을 “목재펠릿 및 그 밖에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필수품”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제44조의4로 하고,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해상운송비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4조의3(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지역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도서민,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① (생 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의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u>목재펠릿</u> 의 해상운 송비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화 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제44조(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① (현행 과 같음) ② ----- ----- ----- -----목재펠릿 및 그 밖 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u>생활필수품</u> ----- ----- -----. <u>제44조의2(해상운송비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 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환수할 수 있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u> <u>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u>

<신 설>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생 략)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 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 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 다. 제44조의3(해상운송비 지원에 관 한 지역협의체) 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의견 을 수렴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 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 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제44조의4(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현행 제44조의2와 같 음)
---	--